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73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8. 2.

발의자 : 성일종 · 이종배 · 김선교
이종성 · 이인선 · 윤재옥
이명수 · 이주환 · 이용호
조명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「전기안전 관리법」 및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른 사용 전 검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「기계설비법」에서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가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과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불편이 있고,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에 관한 사전 협의 절차가 부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.

이에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「기계설비법」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를

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사용검사 진행에 따른 건축주의 혼란 및 불편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제4항제6호의2 신설).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4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호의2. 「기계설비법」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제4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건축물의 사용승인) ① ~ ③ (생 략)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·준공 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,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 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2조(건축물의 사용승인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6의2. 「기계설비법」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</u>
7. ~ 11. (생 략) ⑤ · ⑥ (생 략)	7. ~ 11. (현행과 같음)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